

『생명, 윤리와 정책』 투고지침

제정: 2017. 2. 14.
개정: 2017. 4. 14.
개정: 2018. 7. 25.
개정: 2018. 10. 17.
개정: 2019. 4. 17.
개정: 2019. 12. 30.
개정 : 2020. 4. 21.
개정 : 2020. 7. 14.
개정 : 2021. 4. 16.
개정 : 2022. 12. 9.
개정 : 2023. 12. 22.
개정 : 2025. 6. 2.
개정 : 2025. 10. 2.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에 지침된 원고 투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 자격 및 원고 내용 등) ① 『생명, 윤리와 정책』 원고 투고 자격에는 전공 등의 제한이 없다.

② 투고 원고는 생명과 관련된 윤리 및 정책에 관한 주제이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③ 원고의 유형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1. 연구논문(Original Article) : 저자의 독창적인 이론이나 새로운 지견을 제시하는 논문으로 <원고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2. 단신(Brief Article) : 연구결과나 진행정도가 연구논문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중요한 새로운 견해 또는 단편적 보고, 추가 연구를 위한 비평 등을 제시하는

원고이며, 2,000단어 이내로 연구논문의 형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3. 증례보고(Case Report)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한 중요한 사례나 사업 등을 자세하게 보고 또는 소개하는 형식의 원고이며, 내용에 따라 분량을 제한할 수 있다.
4. 종설(Review Article) : 특정 주제에 관하여 이미 공개 또는 출판된 국내외 법률 및 제도, 정책 및 지침이나 보고서 등을 종합·정리하여 시사점 제기 또는 대안 제시 등을 제시하는 원고이며, 편집위원회가 지정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조2(젠더혁신정책의 반영) ① 원고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성과 젠더를 구분하여 기술하고 그에 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원고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원고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3조(논문 제출) ① 투고자는 원고 마감기한(3월 말, 9월 말) 내에 온라인 투고 시스템(<https://konibp.jams.or.kr>)를 통해 원고 파일을 편집위원회에게 제출한다. 단, 필요시 편집위원장은 원고 마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투고자는 원고 파일 제출 시 표지와 원문을 나누어 업로드하며, ‘논문투고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윤리확약서’ [연구윤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위임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와 한국 학술지인용색인 논문 유사도 검사 서비스 등 논문 표절방지 시스템을 활용한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 작성) ① 투고 원고 중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투고자는 ‘[생명, 윤리와 정책] 권고양식’ 을 활용하여 원고를 작성할 수 있다.

1. 제목(한글과 외국어)
2. 저자명(한글과 외국어)
3. 본문

4. 색인어(6개 이내의 한글 및 외국어)

5. 참고문헌

6. 초록(공백 포함 글자 수 1,500자 이내의 한글 및 외국어)

② 편집위원회는 투고 지침에 맞지 않거나 국·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원고는 심사하지 않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수정 원고에 대한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고자에게 게재 불가를 통보한다.

제5조(논문 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저자(들)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저자(들)은 게재 확정 시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위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규정 준수) 투고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구윤리지침과 『생명, 윤리와 정책』 출판 및 연구 윤리에 관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에 저촉될 경우 게재 취소 및 향후 투고 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7조(논문 자유이용 허락 조건)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논문의 재사용을 위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학술지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조건(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으로서 CC BY (저작권 표시) 적용 정책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

제8(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지침의 시행 및 개정) 본 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로부터 시행되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개정된다.

〈원고에 관한 세부 지침〉

1. 원고는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한 파일은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원고 제출 시에는 표지(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직위(한글/영문)와 원고파일(논문 제목 및 원고)을 나누어 업로드 한다.

제출 :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konibp.jams.or.kr>) “신규논문제출” 이용

제출 파일: 작성 원고, 논문투고신청서, 연구윤리 협약서,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위임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정책원 양식),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서

문의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별관 2층 국가생명윤리정책원(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Tel: 02-737-8970, Fax: 02-737-6006, e-mail: nibp@nibp.kr

3. 원고는 한글 또는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를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한글로 쓰고 원자(原字)는 처음 1회에 한해 괄호 안에 밝힌다. 단, 한글이 없는 경우에 원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으나 대소문자 구별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생물연도를 밝힐 때는 괄호 안에 기록한다.

예) 반 렌셀레어 포터(Van Rensselaer Potter, 1911-2001 A.D.)

5.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며 모든 단위는 국제표준단위(SI 단위)를 사용한다.

예) cm, kg, ml 등

6. 연구논문은 A4용지 20장 내외로 하며 최대 30장을 넘을 수 없다. 상,하,좌,우 모두 20mm 여백(머리말, 꼬리말 15mm)을 두고 글자 크기는 휴먼명조 10 포인트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180으로 한다. 원고의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시한다.

7. 본문의 순서는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색인어(6개 이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초록,

영문 색인어(6개 이내)로 구성한다.

8. 논문의 제목과 저자명,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한다.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구와 논문 작성에 참여한 기여도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하고 저자명 사이를 쉼표로 구분한다. 단, 제1저자(주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명기하여 제출하며 교신저자는 2명 이내로 한다.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직위, 이메일 주소를 기술한다. 필요한 경우 연구비 수혜, 학회 발표, 감사 문구 등 공지사항을 기술한다.
9. 논문의 제목과 저자는 가운데 정렬로 표기한다.
10. 초록은 줄을 바꾸지 말고 한 단락의 서술형으로 기술한다. 국문 초록과 영문 초록의 분량은 공백 포함 글자 수 1,500자 이내에서 작성한다.
11. 본문은 서론(연구의 목적과 배경), 본론(대상 및 방법, 연구 결과), 결론(고찰, 저자의 견해 등)으로 구성한다. 본문의 목차 번호는 아래의 예를 따른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의 수행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과제 번호, 승인번호, 승인일 등(각주로 처리)이 포함되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본문 목차 번호

I., II., III., IV., ……

1., 2., 3., 4., ……

가., 나., 다., 라., …

1), 2), 3), 4), …

가), 나), 다), 라), …

12. 그림과 도표는 간결하게 만들고 반드시 본문 중에 인용되어야 한다. 사용한 모든 약자는 표 밑에 풀어써주며 이외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여 본문을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같은 단어 또는 숫자가 다음 줄에 나오더라도 반복하여 써야 한다. 기호 사용 시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

주에 설명한다. 번호는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의 순서로 한다.

13. 참고문헌은 본문 내에서는 각주 처리(인용면수 표시)하고 본문에 인용된 순으로 논문의 말미에 나열한다. 이때, 논문의 말미에는 참고문헌의 인용면수는 표기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성명을 모두 쓰고 중국 및 일본 저자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서양인명은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고 온점(.)을 사용하며 성은 이름에서 한 칸 띄고 전체를 표기한다. 저자가 3인 이하이면 전원을 기록하고 4인 이상이면 3인 기록 후 동양인 저자의 경우 ‘외 0명’ 또는 서양인 저자의 경우 ‘et al’ 로 기록한다. 학술지의 표기는 Index Medicus의 공인된 약어를 사용한다.

예) 잡지의 경우

문한나, 박소연, 김명희.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본 한국의 불법생식세포 매매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6.

C.M.S. Ribeiro, R. Sarrami-Forooshani, L.C. Setiawan, et al. “Receptor usage dictates HIV-1 restriction by human TRIM5α in dendritic cell subsets”. 『Nature』. 540. 2016.

예) 단행본의 경우

김현철, 고봉진, 박준석 외 1명. 『생명윤리법론』. 서울 : 박영사. 2014.

K. Devolder. 『The ethics of embryonic stem cell research』. Oxford, UK :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예) 단행본 속의 문헌의 경우

진교훈. “우리나라 생명윤리기본법안의 주요내용”. 『현대사회윤리연구』. 울력. 2003.

S.L. Erikson. “Global Ethnography: Problems of Theory and Method”. 『Reproduction, Globalization. and The State』. Duke University Press. 2011.

예) 학위논문의 경우

김명희. 『한국의 생체장기 기증제도에 대한 윤리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4.

T. Campbell. 『Personal Ontology and Bioethics』. Ph.D.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2015.

예) 온라인(인터넷 매체)의 경우

S.A. Caramota(저자, 또는 웹페이지 명).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A Snapshot of America’s Foreign-Born Population(인용 페이지 타이틀)”. 2000. <<http://www.cis.org/articles/2001/back101>>. (마지막 접속일 2017.7.16.).

예) 신문기사의 경우

○○일보. 2001. 9. 5.

김○○. “인터넷과 법률시장”. ○○일보. 2001. 11. 30. (* 필요한 경우 글쓴이와 제목을 밝힐 수 있음)

14. 투고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 복제권, 전송권 위임동의서

『생명, 윤리와 정책』 편집위원장 귀하

논문제목(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은 본 논문이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게재가 확정되는 경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함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은 본 논문이 다른 연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만일 본 논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및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저자(들)은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은 본 논문이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하는 『생명, 윤리와 정책(Bio, Ethics and Policy)』에 게재될 경우, 논문 사용권 및 배포권·복제권·전송권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위임합니다. 게재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License(CCL)를 부착하여 자유이용허락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게재 논문은 CC BY (저작권 표시) 적용 정책을 표방하며,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이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서명
교신저자				휴대폰: 직 장:		
제1저자 (주저자)				휴대폰: 직 장:		
공동저자 1				휴대폰: 직 장:		
공동저자 2				휴대폰: 직 장: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생명, 윤리와 정책』 편집위원장 귀하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원고모집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받는자	수집 ·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보유 · 이용기간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름, 소속, 직위, 연락처, 사무실(자택)주소, 이메일주소, 생년월일	- 학술지 투고 및 발행 - 논문 투고 및 원고 배송 관련 연락	준영구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제공사항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생명, 윤리와 정책」 학술지 발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생명, 윤리와 정책」에 논문 투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자 구분	동의 여부	일자	성명	서명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